

문서번호	인재양성과-15492	실무관	교육지원 팀장	인재양성 과장	문화행정 국장	부시장	시장
보존기간	5년	김진희	이유진	가재환	고정희	유현아	김영남
결재일자	2025.11.27.						
공개여부	비공개						

2026년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계획

□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11개월
- 사업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중 만5세~만17세(7~19세) 아동, 청소년
- 지원규모 : 630명
- 사업예산 : 675,675천원(시비)
- 사업내용 : 예능, 컴퓨터, 기술 과목 학원비 일부 지원



문화행정국
[인재양성과]

2026년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사전점검표

최종결재자

Handwritten signature

항 목	점검 및 고려사항	점검 완료	해당 없음	비고
① 일 반	법령 ☞ 관련 법령·조례·규칙 및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였습니까? ■ 관련 법령 :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예 ☒ 부	√	☐	
	배경 ☞ 중앙정부지시사항, 공약사업, 시장지시사항 등 사업추진배경 ■ 추진배경 :	☐	√	
	예산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	675,675천원
	홍보 ☐ 보도자료 ☐ 정읍소식21 ☐ SNS ☐ 공청회 ☐ 기타 ()	☐	√	
② 절 차	선행 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타당성검토 ☐ 시의회승인 ☐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 기타 ()	☐	√	
③ 소 통	의견 수렴 ☞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수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토론회 ☐ 공청회 ☐ 공모 ☐ 설문조사 ☐ 위원회 ☐ 기타 ()	☐	√	
	갈등 관리 ☞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하였습니까? ■ 이해관계인 : ■ 예상갈등요소 및 대응방안 :	☐	√	
④ 협 업	유사 사례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까? ■ 유사사례 : 김제시 지평선 나눔 스터디, 군산 희망 스터디 사업	√	☐	
	의견 수렴 ☞ 관련 기관(부서, 단체 등)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까? ☐ 관련 기관 () ☐ 관련 부서 () ☐ 관련 단체 () ☒ 기타 (정읍시학원연합회)	√	☐	
	지역 축제 ☞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 수립완료 ☐ 수립 중 ☐ 수립예정	☐	√	
	자문 ☞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 문 가 : ■ 자문결과 :	☐	√	
⑤ 혁신	규제 개혁 & 적극 행정 ☞ 해당 정책이 불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에 해당됩니까? ☐ 규제개혁 ☐ 적극행정 ☐ 기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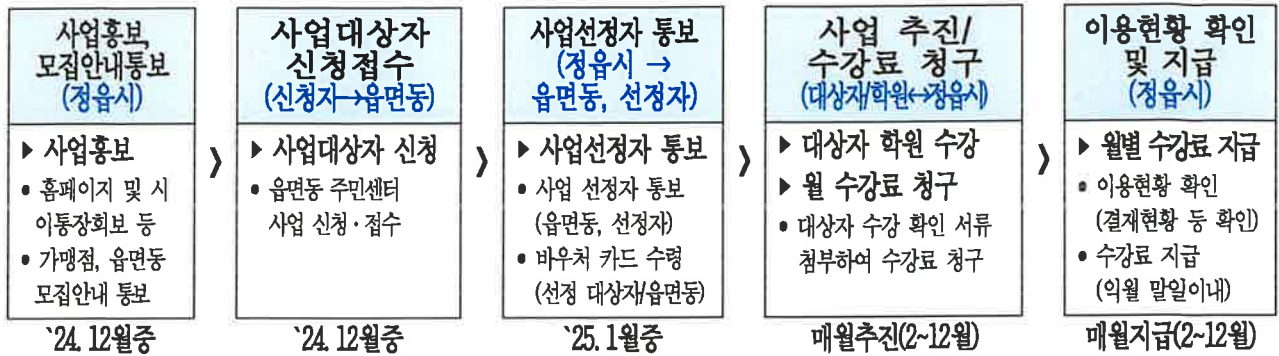
2026년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계획

-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민·관의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12월(11개월)
- 사업예산 : 675,675천원(시비)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5세~만17세(7~19세) 아동, 청소년 630명
※ 제외자 : 타 청소년복지사업(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더큰나무키우기프로젝트 등) 이용자
- 사업내용 : 예능, 컴퓨터, 기술 과목 등 학원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 기준 90% 지원(월 최대 135,000원 / 시, 협력학원)
 - 분담율 : 1인당 월 15만원 기준 시 부담 65%(97,500원), 학원 부담 25% (37,500원), 학생 부담 10%(15,000원)
- 지원분야 ※ 학교 정규 과목에 대한 지원은 제외(보건복지부 방침)
 - 미술, 음악, 무용, 컴퓨터, 디자인, 미용, 바둑, 로봇 등
- 선정기준(우선 순위별로 선정)
 - ①국민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다문화가정, ④다자녀가정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 다자녀 가정 : 자녀(사업대상 연령의 자녀)가 많은 순 적용
(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 지원 인원 미달시 3자녀(사업대상 연령의 자녀 기준) 이상 가정부터 1세대 2명 지원 가능 / 사업 신청시 2순위 자녀 명단 신청·접수
- 추진근거 :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 추진 절차



3 2025년 추진실적

- 지원기간 : 2025. 2 ~ 12월 / 11개월
- 예산액 : 680,625천원(시비)
- 신청접수 : 941명(수급자 71, 차상위 25, 다문화 80, 다자녀(2자녀 이상) 765)
- 선정인원 : 630명(수급자 67, 차상위 24, 다문화 80, 다자녀(2자녀 이상) 459)
 - ※ 1~13차 추가선정 (34명 / 매월 추가선정)
 - ※ 추가선정사유 : 2개월 이상 미참여 및 타 유사사업 선정에 따른 포기자 발생
- 지원실적 : 655명, 596,970천원(시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총 누적 합계	월별 지원 현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인원	6,138	611	615	617	620	626	623	612	606	606	602	지원
지원금액	596,970	59,475	59,845	60,040	60,313	60,899	60,606	59,436	58,949	58,946	58,461	미도래

4 참고 사항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의 경우 다른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의 부담이 크므로 경제적인 부담 경감 등 정책

실효성을 위해 사업 선정 인원 미달(후보인원 포함)의 경우 사업 대상 연령인 7~19세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에 한하여 1가정 2명씩 지원.

○ 전년도 대비 달라지는 점

2025년 선정기준
• 1가정 1명 이용 지원 (사업 선정인원 미달시 추가모집 진행)

2026년 선정기준
• 1가정 1명 이용 지원 단, 사업 선정 인원 미달의 경우 사업 대상 연령인 7~19세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에 한하여 1가정 2명씩 지원 • 선정방법 : 7~19세 자녀가 많은 순으로 선정 (동수의 경우 저소득자 우선 선정)

4 추진 계획

- 참여 협력학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25. 12월
 - 신청기간 : '25. 12. 1.(월) ~ 10.(수) / 8일간 / 인재양성과
 - 2025년 참여 협력학원 : 49개소 (음악 32, 미술 10, 무용 2, 컴퓨터 4, 바둑 1)
 - ※ (재단)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사업 협력학원과 동일기간 모집 예정
- 사업 운영 기준 안내 및 참여 대상자 신청·접수 '25. 12월
 - 사업 신청, 사업 처리 절차 등 운영기준 읍·면·동 안내
 - 신청기간 : '25. 12. 17.(수) ~ 30.(화) / 2주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참여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카드 배부 '26. 1월
 - 선정인원 630명, 대상자 선정 통보(우편 등)
 - 바우처 카드 수령 배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령
- 사업 시행 '26. 2 ~ 12월

- 붙임 1. 2026년 별별꿈 재능바우처 협력학원 모집 공고문 1부.
2. 2026년 별별꿈 재능바우처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붙임1] (신청자용)

(앞면)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서

※ 지원대상자의 학교 및 학년의 경우 2026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입학예정자로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작성

※ 7~19세 연령의 3명 자녀에 해당되지만 지원 신청은 1명만 신청 가능

세대주	성명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주소 (도로명)	(우편번호:)					
지원대상자 (1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학년			학교 학년	연락처 (휴대전화)		
	수강희망 과목	1순위 :		학원명 (반드시 2순위까지 작성)		1순위 :	
		2순위 :				2순위 :	
〈 2026년 기준 연령 7~19세(2006년 ~ 2020년생) 자녀 3명 이상 가정 2순위 작성 〉							
지원대상자 (2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학년			학교 학년	연락처 (휴대전화)		
	수강희망 과목	1순위 :		학원명 (반드시 2순위까지 작성)		1순위 :	
		2순위 :				2순위 :	
수강료 10% 자부담 동의여부(필수체크)		여, 부		타바우처 이용상태		이용여부 : 여 부 바우처명 :	
신청 구분	수급자 ☐ 차상위 ☐ 다문화 ☐			자녀 현황 (전 신청자 필수작성)	자녀 수(성인자녀포함)		명
	다자녀(2자녀) ☐ 다자녀(3자녀 이상) ☐				자녀 수(7~19세만 해당)		명

1) 다자녀 가정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작성된 사항에 따른 허위사실이나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사업 참여에 불성실(자부담 미납 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제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신청인 전화번호 :

정읍시장 귀하

※ 안내사항

【신청자 유의사항】

1.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이용 대상자는 1세대당 1명에 한함

※ 자부담분10%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 불가

2. 타 유사사업 이용지(스포츠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더큰나무키우기프로젝트, 지역 으뜸 인재육성사업 등) 중복지원 불가 ※ 중복 지원 적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3. 수용 가능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및 점수에 따라 2순위 학원으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준】

1. 부담비율 : 시·협력학원 90%, 본인부담 10%

(시 지원 기준에 초과된 금액은 학원, 학생 자부담)

【이용방법】

1. 수업료 지원 방식은 바우처 카드로 지원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년도 사업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이 아닌 타인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나. 이용자가 2개월 이상(출석률 50%미만)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다. 본인부담 수강료 10%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

라. 타 청소년복지사업 중복 지원 받는 경우

마. 매년 2월말까지 적용 기간이 지난 후 동일 과목으로 학원 변경 불가.

[붙임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정읍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읍시에서 수행하는 아래의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정읍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정읍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읍시 복지시책인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관련 업무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교(학년), 소득수준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용

2. 본인은 정읍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후원금을 이용자에 사업비를 지급할 시)

2)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협력학원(이용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등)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원비 지원금 지급, 이용자 안내 및 관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용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정읍시가 처리제공하는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1) :

(서명 또는 인)

정보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2) :

(서명 또는 인)

정보제공 동의자 (부) :

(서명 또는 인)

정보제공 동의자 (모)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사업 신청시 안내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는 1세대 1명만 이용 지원 단, 선정 인원 미달일 경우 1세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① 연령 7~19세 자녀가 많고, ② 저소득 순으로 선정
- ※ 2순위 지원 대상자 신청 자격 : 연령 7~19세 자녀 3명 이상 가정
- 자부담분 10%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타 유사사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더 큰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으뜸인재육성사업 등 청소년 지원 유사 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시 타 유사사업 참여중일 경우 선정 제외

○ 바우처 카드 이용 방법

- 참여 대상으로 선정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카드 수령
 - ※ 기존 참여자가 재선정 된 경우 기존 카드 사용 가능
- 수강하고 있는 협력학원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 실시(매월 20일 이후)
 - ▶ 월 학원비 기준 초과분은 본인부담 원칙

○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중지
 - ▶ 허위로 결제 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용할 경우
 - ▶ 이용자가 연속하여 2개월 이상(출석률 50%미만 포함) 미이용할 경우
 - ▶ 자부담 10%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2개월 이상 자부담 미 납부시 다음달 10일(주말일 경우 다음날) 사업 참여 중지 처리
 - 또한, 다음달 10일 전 미납된 자부담 납부시 참여 계속 가능
 - ▶ 본 사업 참여중 타 유사사업을 지원 받는 경우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1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140호, 2024. 6. 14.,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인재양성과), 063-539-5576

제1조(목적) 정읍시 아동, 청소년에게 방과후 교육비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14.>

제2조(교육지원)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육비 및 방과 후 재능교육비

2.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경비

② 교육지원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으로 한다.<개정 2024.6.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개정 2024.6.14.>

6.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금액)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4.6.14.>

제5조(지원 절차) ①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6.14.>

②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출·사망 하는 등 지원 금액 또는 대상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